#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8498 제안연월일: 2025. 2.

제 안 자: 환경노동위원장

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### 가. 심사 경과

의안명	대표발의자	발의일	경 과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3044호)	조지연	2024. 8. 21.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8차 전체 회의(2024. 11. 21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4839호)	박홍배	2024. 10. 23.	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·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5526호)	김주영	2024. 11. 13.	(2024. 11. 28.)

나.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 2. 18.) 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, 제422회

국회(임시회)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(2025. 2. 20.)에서 이를 심의·의결함.

##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,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 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.

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,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.

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,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).

#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9조의 3제1항).

나.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·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9조의3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의 제목 중 "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"를 "기상재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"재해에"를 "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(이하 이 조에서 "기상재난"이라 한다)에"로, "협력"을 "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"를 "기상재난"으로, "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"를 "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을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기술·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"을 "기상재난의 방지 및 대응을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9조의3(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제19조의3(기상현상으로 인한 재 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기관 간 협력 등) ① -----등)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 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기관 간 -----「재난 및 안전관리 <u>기본법」 제3조</u>제1호의 재난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(이하 이 조에서 "기상재난"이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 달·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라 하다)에-----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----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-----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.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 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 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예 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 할 수 있다. 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을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기술 ·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3	제]	[항	및	제2	항어	) II	}른	<u>기</u>
<u>상</u>	현상	으로	<u>.</u> 6	] 한	재:	해	방지	를
위형	한	기관	· {	<u>-</u> 현	클릭(	케	필요	-한
사형	항은	환.	경부	. 렁 스	으로	정	한다	

3				<u>7]</u>
<u>상재난의</u>	방지	및	대응을	